

질의응답 사례 (발췌: 교육부)

질의(Q)	응답(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권익위 청탁금지법 FA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p style="text-align: right;"><권익위 청탁금지법 FA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p style="text-align: right;"><권익위 Q&A 사례집, 2016.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p>

사례 69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11)

Q

대학원생 A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후 한정식 집에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논문심사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수들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7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수들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였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논문심사 교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았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제21조)